



# 제주보육원 생활지도원 공개채용

모집기간 22.05.20. ~ 22.06.03

## ☞ 모집부문

### 계약직 생활지도원 (육아휴직 대체근로자)

- 채용인원 : 1명
- 담당직무
  - 아동 생활지도(학습, 학교생활, 프로그램 진행/인솔 등)
  - 보육일지 및 프로그램 계획서/보고서 작성
  - 시설물 관리
  -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
- 급 여 : 5급1호 31,428,600원 (세전) ※시간외 포함, 가족수당 미포함
- 임용(채용계약) : 채용 후 ~ 23년 5월

## ☞ 지원자격

-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유치원/초등학교/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
-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에 해당하지 않는자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지 않는자
- 아동학대, 정신질환, 마약(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)의 전력이 없는자
- 상주 근무 가능자
- 만60세 미만인자(\*시설 정년 만60세)
-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

## ➡ 전형일정

22.05.20 ~ 06.03

22.05.20 ~ 06.08

22.06.09

채 용

서류전형  
(18시까지)

1. 면접전형  
2. 인성검사

합격  
(홈페이지 공지)

1. 건강검진  
2. 범죄경력조회

수습평가  
(3개월)

1. 임사결정  
2. 채용계약

- ♦ 상기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♦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정 후 접수기간 내에 수시 면접 실시
- ♦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함
- ♦ 각 전형별 상세일정은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함
- ♦ 인성검사, 건강진단서, 범죄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임용(채용계약) 진행됨

## ➡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

### 1. 제출서류

- 1) 자사양식 이력서·자기소개서·개인정보제공동의서 (붙임1 서식) 1부
- 2) 코로나 19 백신접종 증명서

\* 정부24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),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(<https://nip.kdca.go.kr/irgd/index.html>), 어플리케이션 '쿠브(COOV)'에서 출력 가능 - 캡쳐본 가능

### 2. 지원방법

- 1) 이메일 접수 ([jeju887@hanmail.net](mailto:jeju887@hanmail.net))

- ♦ 응시원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♦ 2022년 6월 3일(금),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
- ♦ 매일 열람 후 지원완료 문자 발송
- ♦ 자격증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은 최종 합격 후 제출
- ♦ 서류전형 합격자와 일정 조정 후 수시 면접 실시

## ➡ 기타(유의)사항

1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2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3.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

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).

4.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5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  6.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.
  7.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제주보육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
  8. 기타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9. 관련 법령 정보
- \*\*\*\*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 \*\*\*\*
-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 10. 24., 2021. 12. 21. >
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<신설 2021. 12. 21.>

\*\*\*\*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\*\*\*\*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  - 1의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1의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- 1의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1의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1의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1의7.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, 「지방재정법」 제97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4조제2항제1호, 「장애인복지지원법」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「형법」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다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1의8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1의9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다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\*\*\*\*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\*\*\*\*

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아동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벌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1. 19., 2016. 3. 22., 2016. 5. 29., 2017. 9. 19., 2017. 10. 24., 2018. 12. 11., 2019. 1. 15., 2020. 4. 7., 2020. 12. 29., 2021. 12. 21.〉

- 직무내용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제주보육원 인사담당자 (☎ 064-743-5020)